

# “국민이 해냈다” 100만 인파 ‘감격’

국회 일대서 가결 직후 너도나도 ‘탄성’  
“감격스럽다” “벅차다” 눈물 흘리기도  
“이제 시작...수사·처벌 모두 지켜볼 것”

“위대한 국민의 승리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14일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일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세 시간가량 남았음에도 일찍부터 전국에서 모여든 인파로 발 디딜 곳 없이 붐볐다.  
‘윤석열 탄핵 고3 연합’, ‘공연계의 빛과 소금 연합’, ‘호랑이 등 굶어주기 협회’ 등 독창성 있는 깃발로 무장한 이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아이돌 팬클럽의 응원봉을 들고 삼삼오오 집회에 참여한 이들도 자주 보였다.  
영하까지 떨어진 추운 날씨에 손과 귤이 금세 꽁꽁 얼어 붙어졌지만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하라’는 외침과 팻말을 든 손을 멈추지 않았다.

오후 5시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찬성 201표로 가결됐음을 밝히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선 세상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의 촛불집회에 함께한 참여자들은 이들도 모를 옆 사람의 손을 꼭 잡아 흔들며 “국민이 해냈다”고 환호했다.  
광주에서 친구들과 함께 왔다는 김민지(23·조선대·여)씨는 “비상계엄 이후 일상에 대한 위협을 느껴 여행을 취소하고 집회에 참석했다”며 “뒤리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저 감격스럽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두 딸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김민기(52)씨는 “벅찬 마음 뿐”이라며 “자녀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집회에 함께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발표 후 촛불집회 현장은 대축제의 장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바뀌었다.  
10·20대들이 주로 아는 대중가요부터 어르신 참석자들을 위한 옛 트로트 등 무대에서 연이어 나오는 “승전가”에 맞춰 참석자들은 응원봉과 피켓을 흔들며 ‘윤석열 퇴진’ 외쳤다.  
탄핵소추안 결과 발표 전 엄숙한 표정으로 시종일관 국회 중계 화면만 바라봤던 시민들의 표정은 비로소 환해졌다.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뒤 일부 참여자들은 자리에서 일

어나며 남아있는 이들을 향해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건네며 햇볕과 먹거리 등을 나눠주곤 했다.  
따뜻한 마음을 받은 참여자들은 떠나는 이들에게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시라”고 화답했다.  
탄핵소추안 결과 발표 후 1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집회 현장을 지키고 있던 이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가자고 결의했다.

12·3 비상계엄 후 국회에서 열린 집회에 줄곧 참여해 왔다는 오현석(27)씨는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첫 단추가 이제 끼워졌을 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투쟁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씨는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 과정과 재판 등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모든 순간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여의도=안재영·양시원 기자

## “1980년 5월 광주,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전문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빛을 졌다”  
“윤석열, 내란 진두지휘 우두머리...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뛰어나와 펜으로 계엄군 처량을 막아셨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도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심폐소생술 해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키 주역이십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아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포고령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에 복귀하여 충실하게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3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 이와 똑같은 포고령이 4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0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 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유언버어의 날조 및 유폐를 금한다. 유언버어가 아닐지라도 1)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2) 복고와 동일 주장 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3) 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여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의 포고령과 2024년 12월의 포고령은 쌍둥이처럼 빼닮았습니다. 유언버어 날조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으로 대체됐을 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며 집회와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처단하겠다는 밝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습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통제 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도 매도했습니다.

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해 국회로 뛰어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군 따랐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19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되어 단지 모를 장소에 구금됐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됐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보도내용은 사전 검열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없이 체포, 구금돼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됐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됐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빛을 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사·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사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2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인위적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해 분회장의 진입을 시도했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분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해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계엄직전에는 최경회 북괴공작원까지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된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발인 내란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습니다.

과중군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 정중수가 아직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싸 다 정리해”라며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월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력에 큰 충격과를 가했고, 자나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지명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헌정표결해 주십시오. 국격 위기에 당리 당락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직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엄중한 시국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라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민방에 보여주시길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